

의안번호	2211257
의 퇴 인	남인순 의원
회 답 일	2025. 7. 11.
추 계 번호	25C357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업에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함 ※ (안 제2조제3호) “학교사회복지”란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학생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해결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향상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재 학생과 관련된 복지사업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음
-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등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¹⁾ 등에 따라 학생이 학교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제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복지, 진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²⁾ 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가 추가되어 이에 따라 관련 지원 사업 및 조직이 신설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추진될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2. “지원대상학생”이란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 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